

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8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4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노인환자의 증가와 의료비 상승에 따른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시 경제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(안 제4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농어촌 취약지역과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치료나 진료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농촌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,
- 연간 13,223천원의 세수결함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참고자료를 대비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